



# 「목차」

<b>I. 비자(사증)</b>	출입국	2
	투자자를 위한 비자	3
	외국인 등록 및 체류	5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9
	Q&A	11
<b>II. 외국인의 회사설립</b>	한국으로의 진출 형태	14
	외국기업(법인)설립 절차	16
	법인(주식회사, 발기모집) 설립 절차	19
	개인사업자 ⇒ 법인으로의 전환	22
	외국기업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24
	외국인 투자 제외 및 제한 업종 개정	25
	Q&A	29
<b>III. 세제</b>	국내 세법 개요	32
	국세	35
	지방세	39
<b>IV. 노무·고용</b>	노동법	44
	사회보장보험	46
<b>V. 상표 및 의장제도</b>	지적재산권 제도	48
	지적재산권의 종류	49
	출원 및 등록절차	50
<b>VI. 부동산</b>	부동산 임대	60
	임대관련 유의사항	61
<b>VII. 업종별 창업가이드</b>	전자상거래업	63
	음식점(레스토랑)	64
	인터넷 무역업	66
	영어학원	67
<b>VIII. 부록</b>	서울의 소상공인지원 서비스	70
	기관목록	73



## 「비자(사증)」

### 비자란?

- ▶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입니다.
- ▶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출입국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 할 때에는 입국하기 전에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는 입국목적(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보통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스티커 또는 스탬프(고무인) 형식으로 날인되어 발급됩니다.

### 외국인의 입국방법

#### 1 비자 없이 입국하여 공항 입국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및 기간을 부여받아 입국하는 방법

비자 없이 입국 ▶ 공항 입국심사(체류자격부여) ▶ 국내 체류

#### 2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 공항 입국심사(확인) ▶ 국내 체류

#### 3 비자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초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발급인정서 또는 인정번호 발급 ▶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 공항입국심사 ▶ 국내 체류

- ※ 입국목적(체류자격)에 따라 활동범위가 정해집니다. 90일 기준으로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로 구별되며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자로는, 단기체류 : C-3(단기방문)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 활동 / 장기체류 : D-7(주재원),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등이 있습니다.
-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세부자격 사항은 출입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를 위한 비자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이외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업투자(D-8)비자

- 기업투자(D-8)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 ※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영역 서비스 제공자 제외
- ※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이들은 투자자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D-7) 자격 대상임

-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하는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예비벤처기업확인을 포함함)을 받은 자에게 발급됩니다.

### 주재(D-7)비자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분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 ※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 2)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 ※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필수전문인력

임원 (Executive)	기업투자(D-8)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단,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필수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도 제외됩니다.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전문기술자 (Specialist)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 ※ 비자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비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요청
- ※ 비자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비자 발급
- ※ 체류자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대한민국비자를 여권에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제출서류

최저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 투자 가인 경우(D-8)	해외 모기업(자회사)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D-7)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본사에서 파견되는 경우 - 본사 파견명령서 - 재직증명서	본사에서 파견되는 경우 - 본사 파견명령서 - 재직증명서(1년 이상 근무입증)
거민신분증 사본(중국인의 경우)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초청사유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중국에서 국내에 투자한 경우 - 대한투자의향서 및 계획서(중국 외국인 취급 은행에 제출한 서류) - 중국은행 외환매입증서(중국 외환관리국의 외환매입승인 증빙서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 비자발급협조요청서 - 금융지주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필요시 추가 서류> D-7 비자의 경우 원 비자 상태와 국가에 따라 상이한 제출서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출입국에 국가별, 상태별 확인 요망

※ 국가별, 비자별 상이한 부분은 출입국에 확인

## 동반(F-3)비자

- 동반(F-3)비자는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게 발급됩니다.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 ※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제출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수수료

## 외국인 등록 및 체류



### 외국인 등록

- 91일 이상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 신청서, 컬러사진(3.5cm×4.5cm) 1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피 위임자 재직증명서
- ※ 수수료 : 1만 원(D-8비자의 경우 수수료 면제)

※ 외국인 등록을 한 투자가 또는 임직원이 외국인 투자기업 근무를 마치고 완전히 출국할 때에는 공항 출국심사대의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Q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단기비자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기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허가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투자(D-8)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시 투자금액 활동실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상이함

- 허가의 예외(자격 변경 불허 대상)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Q 기업투자(D-8)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대상

### 기업투자(D-8)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대상

1	단체관광, 순수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2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3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D-8)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대상은 국가, 자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출입국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투자금액이 5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 심사 후 출입국의 승인을 거쳐서 변경이 허용됩니다.



## Q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자금 운영내역(신규투자일 경우)

- 투자금 사용 명세서

- 통장원본과 사본(또는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및 물품 구매 영수증 등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 증명서(기 설립된 투자법인에 파견된 자 및 내국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공동사업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송금관련 입증서류(신규투자일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나 송금확인서

- 투자자금도입내역서(외국환 매입증명서) 원본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파견명령서(법인 파견 필수 전문인력일 경우)

〈3억 미만 투자자 체류허가 시 추가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거주전용 집 계약서 원본과 사본

- 계약금 및 보증금, 월세 지급을 입증할 만한 서류(입금 영수증 또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등 사진 자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가별, 비자별 상이한 부분은 출입국에 확인

## Q 체류기간 연장

- 기업투자(D-8)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하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투자기업의 규모, 투자금액, 영업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시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여부 확인 철저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재 사업자 등록된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일치여부 및 정상운영 여부 확인 강화됨

※ 체류기간 중 폐업이나 등록말소 된 업체의 기업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소명 기회를 주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거나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한 파견 명령서 상 파견기간 확인이 가능할 경우 기 제출한 파견명령서로 가능) 및 재직증명서 (투자자를 제외한 필수 전문이력만 해당)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 증명원
- 부과서 과세표준증명원(국내에서 물품 구매실적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 ※ 필요시 소득세 증빙서류 등(근로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통해 소득실적을 보고해야 함
- <3억 미만 투자자 체류허가 시 추가서류>
  - 사무실 및 거주전용 집 계약서 원본과 사본(임대차 계약 관련 입출금 통장 또는 월세 지불 통장 지참)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모두제출)
    - 수출대금이 회수된 외환통장, 수출입신고필증, B/L(화물운송장), 국내물품구매영수증, 수출입실적증명서 원본(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등 사진 자료

## Q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 기업투자(D-8)비자 자격은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 일자, 유효기간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관련 입증서류
  - ※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Q 체류자격외 활동

- 원래의 체류목적에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9. 6. 15 시행)
-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을 하는 경우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체류자격외활동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총(학)장의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 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 그 밖의 체류자격 외 활동은 출입국에 문의

## Q 재입국허가

- 기업투자(D-8)비자소지자의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 범위)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투자외국인 우대제도



## Q 영주(F-5)자격 부여

- 영주(F-5) 소지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국투자가,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임원 및 해외 첨단기술 인력 등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합니다.
- 대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원보증서
-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Q 외국인투자가 전용 출입국심사대 운영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의 인천공항 출입국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 전용 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창구 운영으로,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등에 대한 체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http://www.hikorea.org> / Tel : 02-2650-6212

- Invest KOREA(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or Support Center)



Invest KOREA(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는 체류지 관할 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 가족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업무, 체류지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의근무처 변경·추가, 자격 외 활동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http://www.investkorea.org>

## Q&A



Q 단기비자(체류기간 90일 이하)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투자(D-8)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출국해야 하나요.

A -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한 외국투자자는 체류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단기종합(C-3)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기타(G-1),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 등은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비자상태별 국가 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출입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단기상용(C-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를 마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외국인(개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해당하는지요.

A -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물론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해당합니다.

Q 기업투자(D-8)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단기사증이나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기업 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체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 기업투자(D-8)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변경신청때, 외국인등록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업투자(D-8)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60일 이전에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연장 횟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기업투자(D-8)비자인 경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최장 5년(단, 투자금액이 미화 5십만 불 미만이면 최장 2년)으로, 개인투자자로서 불법 활동 사실이 없이 사업 활동을 계속하거나 국내에 설립된 외투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가 계속 근무해야 하는 등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실적과 무역거래실적 등 사업실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저는 중국출신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인 (주) ABC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이사(실제 투자자는 아님)로 등재된 중국인 2명에 대하여 기업투자(D-8)비자로 초청이 가능한지요.

**A** -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취업비자인 특정활동(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현재 투자금액이 한국에 있습니다. FDI 절차를 보면 투자금액이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는데 한국에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 FDI 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A** - FDI에서 원칙상 투자금액은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행 상담을 통하여 그 투자금액을 해외로 송금한 이후에 다시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Q** 투자비자(D-8)를 받기 위해서 최소투자금액인 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와 두 명이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해서 투자금액이 1억이 되면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 외국인직접투자요건은 투자금액이 1억 원(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외국인직접투자자에 해당이 되며, 이를 통해 투자비자(D-8)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유한회사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안내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기업투자(D-8)자격 취득(유지)에 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기업투자(D-8) 자격의 취득 또는 유지를 희망하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외국인 단독의 개인사업자(소위 '자영업자')는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자영업자에게는 더 이상 기업투자(D-8) 자격의 취득 또는 유지가 허용되지 않고 무역경영(D-9)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따라서 기업투자(D-8) 자격의 취득(자격변경) 또는 유지(기간연장) 신청시 법무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보완기간(3개월 이내) 내에 **법인전환 완료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법인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 무역경영(D-9) 자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음은 상세사항입니다.

①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기업투자(D-8)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내에 **법인 전환 이행 완료** 후 그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여 **기간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②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법인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내에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여 3억원 사업금액 요건을 면제받고 **기존 사업금액으로 무역경영(D-9)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③ 특히, 다른 체류자격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기업투자(D-8)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 단기방문(C-3) 자격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자영업자 형태로 기업투자(D-8)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시행일(2012.10.29)전까지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자격변경을 신청, 접수한 사람만**이 무역경영(D-9) 자격 희망시 3억원 사업금액 요건을 면제(동 제도 시행전 기존 금액 : 1억원 이상)받고 무역경영(D-9)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즉,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자영업자 형태로 기업투자(D-8)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2012.10.29일 기준**으로 그 전에 기업투자(D-8) 자격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마련된 무역경영(D-9) 자격 요건(3억원 사업금액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세부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유한회사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안내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의 회사설립」



### 외국인(기업)진출형태

- ▶ 외국인(기업)의 한국 진출형태 중 현지법인만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 투자자는 먼저 투자의 목적, 사업 성격, 법인설립비용, 연간세금, 본국으로 자금송금 방법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가장 적합한 투자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으로의 진출 형태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1)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2)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3) 국내지점, 4) 연락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 **현지법인(외국투자법인)**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설립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 회사의 5가지가 있으며, 법률상으로 정해진 수속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면 내국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최소 1억 원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명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5천만 원에서 2010.10월 1억으로 상향 조정)
- **개인사업자** : 2012년 7월 이전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등록하고 투자비자(D-8)를 취득했으나 8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자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필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도 거주(F-2), 재외동포(F4),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F-6) 및 영주권자(F-5)들은 별도의 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 이때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 개인사업의 경우 3억 이상 투자신고를 하고 D-9비자 신청가능
- **지점** : 외국회사가 국내 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 office)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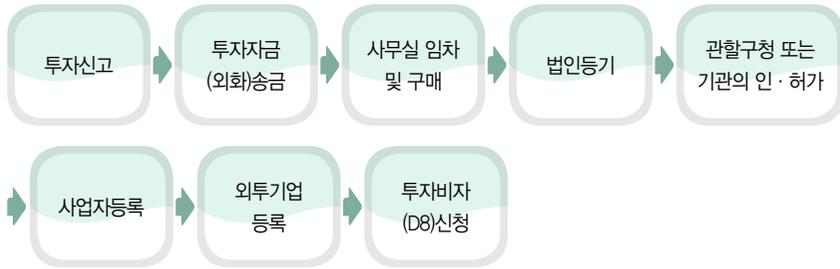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락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리 활동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직접 판매 또는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한 제품의 재고 유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법원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지점/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 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 결산이 동일체임)
신고, 허가 기관	Invest Korea(KOTRA) 및 외국환은행 본, 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 허가)
최소(최대)투자금액	최소: 1억 원 (전체 지분의 10%이상 취득해야함) 최대: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2%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율: 좌측과 동일 *지점세 납부의무: 프랑스, 호주, 모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필리핀
조세감면의 적용	신설 및 증자 참여에 의한 외국인 투자 중에서 고도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전용공단에 입주한 기업에게 조세감면 혜택이 있음	별도의 조세감면은 없음
본국으로의 자금송금	배당세(tax on dividend) 납부	이익금(net profit) 송금은 비과세

# 외국기업(법인)설립 절차



## ① 투자신고

- 신고주체 : 외국투자자
- 신고접수기관 : 외국환은행(국내17, 외국계 22) 및 KOTRA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서(각 기관에서 교부)
  - 투자가 국적증명서
  - 위임장(대리신고인 경우)
  - 공증받은 동의서, 계약서 혹은 합의서(기존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일 경우)

## ② 투자자금 송금

- 세관 휴대반입 또는 외국환은행
- 송금인 : 외국투자자 본인 명의가 기본이나, 제 3자가 대리하여 송금/반입 가능 (배우자, 미성년 자녀)
  -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1호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왔는지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해외송금거래명세서, 외국환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③ 사무실 임차 및 구매

- 단기 비자로 입국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음. 투자자 개인 명의로 먼저 구매를 할 경우 부동산 등기를 위해 주민번호체계의 실명 번호가 필요함.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용

## ④ 법인등기 : 별도 기술

## ⑤ 관할구청 또는 유관기관의 인·허가

-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
  - 예) 요식업 : 관할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 취득
  - 어린이 영어학원 : 관할 교육청에서 학원설립 등록증 취득

## ⑥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서 교부)
  - ⑤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 ▷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 ▷ 외국환 매입·예치증명서 사본
    -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⑦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등록기관 : 최초 투자신고기관(외국환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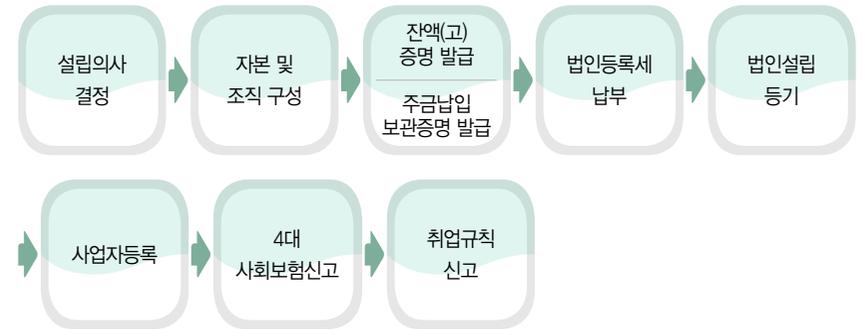
## ⑧ 기업투자비자(D8) 신청

- 신청기관 :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 상기 ⑦번까지의 관련 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 투자자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③국적	처리기간		
내국 투자자		④상호 또는 명칭		즉시		
외국인 투 자 기 업	⑤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⑥자본금	취득 전		
	⑦사업자등록번호			취득 후		
	⑧주소(공장소재지)					
	⑨하고자 하는 사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⑩기존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				
⑪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⑫투자방법	현금	원(USD 상당)	산업 재산 권등	원(USD 상당)		
	자본재	원(USD 상당)				
⑬취득할 주식 (지분)의 내용	종류	1주당액면가	1주당취득가액			
	수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⑭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			

## 법인(주식회사, 발기모집) 설립 절차



### ① 설립의사 결정

단계	내용
1. 사원구성	-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희망자가 회사의 사원(발기인)이 되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합니다.
2. 설립목적 및 출자방법 결정	-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므로 사회 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 발기인의 출자금액, 발기인 이외의 추가 주주 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식 회사를 발기설립으로 할 것인가 모집설립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3. 온라인 상호검색 및 상호결정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 열람/발급(법인) → 상호 찾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상호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등기소를 선택하고 검색하고자 하는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정관 작성 및 인증	- 발기인들이 모여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정관의 작성은 [회사 설립 제출서류 → 주식회사(발기설립) → 정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상호검색은 상호결정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가 진행되면서 회사의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업무처리 : 창업희망자
- 정관인증(공증) : 공증인(변호사, 법무법인 등)

## ② 자본 및 조직 구성

단계	내용
1. 주식발행 사항 결정/ 발기인 주식인수	•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 수 및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하고 이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합니다.
2. 발기인회의	•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본점의 위치를 확정하고, 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출합니다.
3. 이사회	• 선출된 이사는 대표이사를 선출합니다. - 이사가 1인인 경우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않고 1인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 이사가 2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조사보고	• 선출된 이사/감사는 정관, 주식발행사항 및 인수, 의사회(발기인 회의, 이사회)의 일련의 절차 등이 법률/정관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 선출된 이사/감사가 모두 발기인인 경우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상법 298조) 외부의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를 실시
5. 의사록 인증	• 작성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정관/의사록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법 292조 상업등기법 66조)

※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혹은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 주식인수증
- 주주명부
- 발기인회의사록
- 이사회이사록
- 취임승낙서
-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 인감증명서

## ③ 자본 및 조직 구성

단계	내용
1. 주주별 자금납입	•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금액을 회사 대표자(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금액을 납입합니다.
2. 잔액(고)증명 발급 / 계좌동결	• 대표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금이 납입된 계좌에 대한 잔액(고)증명을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잔액(고)증명을 발급받은 계좌는 해당 발급 일자에 대하여 동결됩니다(1일). 따라서 차후 법인계좌로 활용할 만한 수시 입출금이 없는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기본예금의 주금납입보관증명 대신 대표발기인 명의의 계좌의 잔액(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잔액(고)증명 발급에는 수시 입출금이 없고, 압류사항이나, 계좌 자동이체 등이 없는 계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잔액(고)증명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사업자 등록신청이 완료된 이후 사용된 계좌를 법인계좌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법인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잔액(고)증명 발급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고)증명 발급은 주식발행사항이 결정된 이후에서 조사보고를 하는 날까지의 일자 안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사보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사보고 당일에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금납입 보관증명 발급 : 설립 당시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회사 자본금에 대한 증명서'를 주금을 납입할 은행 및 금융기관의 '납입보관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법인등록세 납부

- 등록세 : 자본금의 4/1,000

※ 최하 75,000원(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증가세)

- 교육세 : 등록세의 2/10

- 처리기관 : 관할구청

- 유의사항

- 등록세 감면/면제 대상(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등록세를 신고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WeTax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등기신청 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터넷지로 시스템(www.giro.or.kr)을 이용하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지로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⑤ 법인설립 등기

- 처리기관 : 법원 상업등기소

구비서류

- 정관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이사회이사록(1인 이사 제외)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식인수증
- 주주명부
- 법인등록세 영수필
- ※ 법인설립의 등기는 조사보고가 완료된 날(창립총회, 이사회회의가 완료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 개인사업자 ⇒ 법인으로의 전환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본금이 1억이 넘어야 하며, 이는 해외에서 도입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본금 1억이 넘는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며, 기존의 개인 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 흡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방법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함.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로움.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듦.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함.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임

###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 ① 개인기업 순자산가액 추정

- 신설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주의 출자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까지의 결산과
-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를 위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결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② 자본금 결정, 법인설립

- 개인기업의 순 자산 가액 추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시 자본금이 결정되나, 순자산가액 추정은 법인전환기준일 현재로 평가하게 됩니다.
- 따라서 법인설립등기일과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 순자산가액 추정액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 될 수 있으면 법인설립등기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은 근접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해야 합니다.

#### ③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동일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 동 계약서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되도록 계약 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조세특례를 지원받을 수 없고,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양수도 계약 시에는 개인사업주가 신설법인의 이사일 것이므로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가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④ 개인기업 결산

- 조세특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결산이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 1월 1일 ~ 법인설립일 전월 말 : 순자산가액 추정
  - 1월 1일 ~ 법인전환기준일 : 사업소득 결정, 익년 5월 말 소득세 신고
- 법인전환기준일(개인기업의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결산자료가 필요하므로 개인기업의 결산은 늦어도 법인전환 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해야 합니다.

#### ⑤ 부가세 신고 및 폐업신고

- 사업양수도계약서,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 신고는 폐업 후 바로 해야 하나 폐업 시 제출해야 하는 결산재무제표 때문에 개인기업의 폐업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같이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 폐업사유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기재를 하고, 사업포괄양수도이므로 해당 이전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 ⑥ 부부동산 명의 이전 등 후속조치

- 토지·건물 등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이전과 더불어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취득세·등록세 면제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 이때,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할지 모르므로 폐업신고를 우편으로 할지, 직접 방문해서 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외국기업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 설치는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점설치는 국내 지점을 대표자를 임명하고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같은 등기를 해야 합니다.
- 국내 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본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본사로부터 지정거래은행 앞으로 직접 송금한 외화 자금을 한하여 영업자금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 회사의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므로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결산 순이익금의 경우 외국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 외국 법인 국내 지점 설치 절차

#### ① 설립 신청

- 신청기관 : 외국환은행

#### 제출서류

- 외국 기업 국내 지사 설치신고서
- 본사의 정관 : 본사의 정관(법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마친 재무제표(개인 기업)
- 국내 지사장 임명장 혹은 이에 관한 본사 이사회 결의서
- 위임장(대리신고인 경우)
- 본사의 등기부 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 사업계획서
- ※ 위의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본국 공증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한글번역 후 이들에 대한 공증도 필요

#### ② 지사설립 신고 수리 인가

- 법원 등기소(자본 등기/법인설립)
- 세무서(사업자등록)
  - ※ 구주취득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대상 아님
  - ※ 장기차관 신고는 외투기업 성립 후 가능

#### ③ 법원등기 및 사업자등록(지점)/고유번호 부여(연락사무소)

## 외국인 투자 제외 및 제한 업종 개정



### Q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미래창조과학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5301	개인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
65303	연금업	"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안전행정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84211	교육 행정	교육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주무부
84221	노동 행정	고용노동부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84224	통신 행정	미래창조과학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교부
84320	국방 행정	국방부
84401	법 원	-
84402	검 찰	법무부
84403	교도기관	"
84404	경 찰	안전행정부
84405	소 방 서	"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주무부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육부
85120	초등학교	"
85211	중학교	"
85212	일반 고등학교	"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
85222	공업고등학교	"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
85301	전문대학	"
85302	대학교	"
85303	대학원	"
85410	특수학교	"
85630	평생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
856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
94110	산업 단체	관련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관련주무부
94200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
94913	천주교 단체	"
94914	민족종교 단체	"
94919	기타 종교 단체	"
94920	정치 단체	-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 경 부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관련주무부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 Q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제5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허용 기준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농림축산식품부	벼재배 및 보리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01212	육우 사육업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03112	연근해 어업	해양수산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 하고 허용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 기준과 동일
35111	원자력 발전업	산업통상자원부	〈미개방〉
35112	수력 발전업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주) 2) 특정내용이 없이 연·월·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면개방됨.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부분개방 또는 개방폭이 확대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허용 기준
35120	송전 및 배전업	산업통상자원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자의 의견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38240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 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46312	육류 도매업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해양수산부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51	국제 항공 운송업	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1	국내 항공 운송업	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1	소형 항공 운송업	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8121	신문 발행업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허용 기준
60100	라디오 방송업	방송통신위원회	<미개방>
60210	지상파 방송업	방송통신위원회	<미개방>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미래창조과학부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 상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지칭함
60222	유선방송업	미래창조과학부	중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미래창조과학부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61210	유선통신업	미래창조과학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 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 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증권거래법」 제2조제20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61220	무선통신업	미래창조과학부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61230	위성통신업	미래창조과학부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미래창조과학부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63910	뉴스 제공업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64121	국내은행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단,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 Q&A

**Q**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혜택**

- 대외송금 보장 :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 대금은 송금 당시의 신고 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영업에 관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조세감면이나 입지선정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인보다 우대받음
- 자본재 수입신고 시 특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 물품 명세 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으로 간주하여 수입신고 시 편의 도모
-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 관세청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원료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인조사보고서"로 간주하여 수입신고 시 편의를 도모

**조세감면 혜택**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서 정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고도 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입지지원 혜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이하 "토지 등")을 수익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조세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어도 가능)
- 국가소유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관세감면 혜택**

-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입되는 경우 관세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Q** 한국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 A**
- 해외에 있는 KOTRA 36개 거점 무역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반 신고 및 수행절차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고하면 됨.

### Q 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할 수 있습니까?

A - 가능하며, 현금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고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받아야 함(외국환 거래규정 제6-2조 제4항)

### Q 외국인이 투자한 돈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합니까?

A - 송금한 돈은 회사설립등기 후에 또는 증자등기 후에 사용 가능함.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와 기타 회사설립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후,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회사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을 이체하게 되며 회사는 이 시점부터 자금사용이 가능함.

### Q 투자가 완료되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까?

A - 해외에 있는 KOTRA 36개 거점 무역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반 신고 및 수행절차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고하면 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유발생일(납입을 완료한 경우 등)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는 배당금의 대외송금 시, 외국투자자의 국내 사업비자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임.

### Q 외국 기업 국내 지사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차이점이 있나요?

A -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회계, 결산이 외국의 모기업과 독립적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조세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반면, 국내 지사(사무소)는 외국 법인으로서 회계, 결산을 외국 본사와 같이하며, 적용되는 법률이 「외국환거래법」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며 최초 지사설립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 본·지점(지정외국환거래은행)에서만 영업자금 도입 및 과실 송금이 가능함.

### Q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송금 또는 반입하지 않고 제삼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인정되나요?

A - 외국투자자가 직접송금 또는 휴대 반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나 제삼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동 자금이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함(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가능  
※ 제삼자 명의로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투자자금은 외국투자자가 ○ ○ ○의 ○년○월○일 신고한 외국인 투자자금임을 확인시켜야 함.

### Q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Q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이 투자한 개인기업(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1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 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말소를 하여야 하며,  
- 그 이후, 개인기업의 잔여재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금융기관의 주금납입절차를 거쳐 법인설립을 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해야함



## 「세제」

### 🎙️ 세제란?

▶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법인은, 그 경제활동으로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제가 불공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에 따라 집행되며,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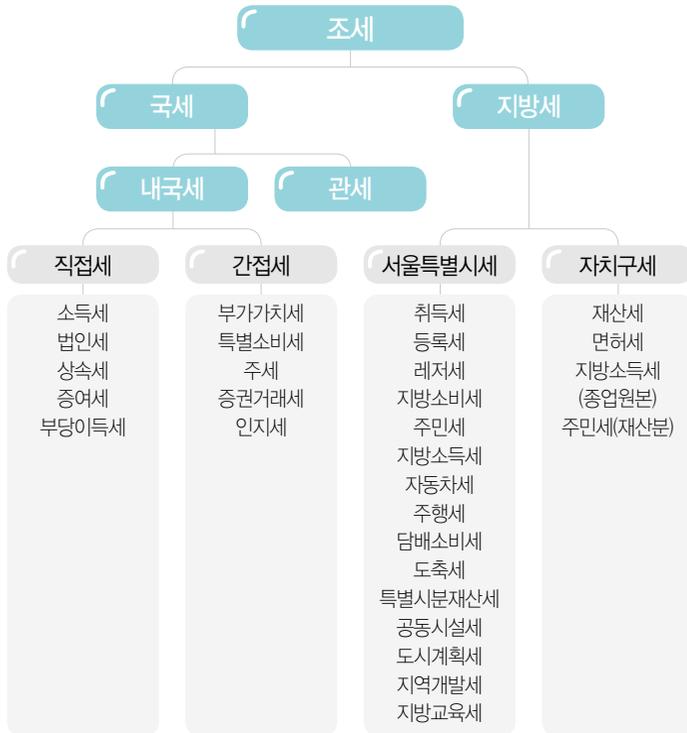


## 국내 세법 개요



### 🔍 조세제도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 🔍 국내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및 세율

구분	세율	내용
부가가치세	10%	상품 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 (일부 생활필수품, 의료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면제될 수 있음)
개별소비세	5~20%	일부 고가상품, 골프장, 오락장소인 경우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함(부가적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포함)
법인세 (주민세)	10%, 22% 법인세액의 10%	
소득세 (주민세)	6~35% 소득세액의 10%	연간소득 납세
근로소득세 원천세액공제		직원 고용 시에,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 사업자 유형

유형	내용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유형	납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영업 규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

구분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종류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
세율	10~22%(2급)	6~35%(4급)
납세지점	본점, 사무소 소재지	사업자 주소
회계 의무	복식 부기	간편장부/ 복식 부기
외심 제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무
신고 납부기간	다음 해 3.31까지	다음 해 5.1~5.31

## Q 주요세제의 신고·납부기간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4.1 ~ 4.25 7.1 ~ 7.25 10.1 ~ 10.25 1.1 ~ 1.25	1.1~3.31의 경영성과 4.1~6.30의 경영성과 7.1~9.30의 경영성과 10.1~12.31의 경영성과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1기 확정 2기 확정	7.1~7.25 1.1~1.25	1.1~6.30의 경영성과 7.1~12.31의 경영성과
		예정 신고 및 예정 통지(일반납세자 한함) - 예정신고: 신규 사업자, 전 납부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등 - 경영부실로 조기에 폐업한 사람은 예정 신고 납세와 예정 통지 납세 중 선택 가능		
소득세	개인사업자 (납세·면세)	확정 신고	다음 해 5.1~5.31	1.1~12.31의 연소득액
		중기에납(11.15 통지)	11.1~11.30	중기에납표준액의 1/2
개별소비세	납세오락장소			3개월의 오락 음식 비용
	포커 머신 설비 장소			3개월의 입장인수
	보석·귀금속	분기의 다음 달 25일 (석유류 그 다음 달 월말)		3개월의 판매금액 (2백만 원 이상인 상품)
	가구제조업 등			3개월 제조 공장의 (표준 액수 초과한 부분)
사무장소 현황신고	개인면세 사업자	다음 해 1.1~12.31		1.1~12.31의 면세수익금액
납부상황신고	납부의무인	일반사업자	다음 달 10일	매월 납부세액
		반기납세자	7.10 / 1.10	



##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 Q 법인세



### 법인세란?

- ▶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이익금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으로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투기 억제 목적을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하는 과세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중복되어 과세되는 이중과세입니다.

### 법인세 과세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	내국 법인	일반법인	각 사업연도금액-(①+②+③) ① 이월결손금(5년 이내)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천만 원+2억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2%
	외국 법인	국내사업장·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인	국내원천소득-(①+②+③) ① 국내발생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항공기의 항행소득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천만 원+2억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2%
청산소득	내국법인(합병 또는 분할 에 의한 해산 제외)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 총액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천만 원+2억 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2%
토지 등 양도소득	2010.12.31까지 소득세법 제 104조의 2에 따른 지정 지역 안의 주택가 비사업용 토지, 지가급등 지역 부동산 양도소득			10%
	①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②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30% (미등기 양도토지 등: 40%) 다만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소득은 과세 제외함

## Q 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7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이러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를 뺀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6~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0,000원 + 1,200만 원 초과액 X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0,000원 + 4,600만 원 초과액 X 24%
8,800만 원 초과	15,900,000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400만 원+(총급여액-500만 원)X50%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900만 원+(총급여액-1,500만 원)X15%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1,125만 원+(총급여액-3,000만 원)X10%
4,500만 원 초과	1,275만 원+(총급여액-4,500만 원)X5%

- **퇴직소득** : 퇴직소득이란 해당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표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하여 결정세액을 결정합니다.

### 퇴직소득의 범위

- ①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 ②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③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⑤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⑥ 그 밖에 제5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양도소득** :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입니다. 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한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기타 자산, 일반주식이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 중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세율

		구분	세율
부동산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미등기자산	70%
		등기자산 중 3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60%
		등기자산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1세대의 주택	50%
		비사업용 토지	60%
		등기자산 중 1년 미만 보유분	50%
		등기자산 중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	40%
		등기자산 중 2년 이상 보유분	누진세율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	60%
	기타자산	위 이외의 기타자산	누진세율
일반주식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주식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위 이외의 주식	20%
		중소기업의 주식	10%

## Q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 ▶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며,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단단계 과세 방식을 취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합니다.

- v 일부 생활필수품 판매, 의료제공,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음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유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는 음식판매
  - 인허가를 받은 학원, 교육 기관 등 교육 서비스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석탄, 무연탄, 복권판매
  - 병원 등 의료보건 서비스업
- v 부가가치세 면세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자 현황을 신고해야 함
- v 그 다음해(1~1.31) 연매출액, 면세서 및 매입세액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소에 신고해야 함

## Q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 혹은 간이 납세자의 제외된 업종, 지역(*)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세율	공급가격 X 10%	공급가격 X 각 업종 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적 발급	발급 못 함
매입세액 공제	전제 공제	매입세액 X 각 업종 부가가치율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사업자, 일반납세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간이납세자에 속하지 않는(부동산임대업, 납세오락장소, 지역) 사업자 등은 간이납세자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간이납세자 당해 납세기간에(1.1~6.30 / 7.1~12.31)의 매출액이 12백만 원 이하일 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 면세함
- 당해 신규 개업할 경우: 개업일부터 납세기간 완료된 날의 공급대가 합산액이 6월로 환산에 12백만 원이 이하일 때 면세함

## Q 납세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개월로 납세기간을 정해 신고 납부

납세기간	신고 대상 확정	신고 납세기간 확정
제1기: 1.1 ~ 6.30	1.1 ~ 6.30의 경영성과	7.1 ~ 7.25
제2기: 7.1 ~ 12.31	7.1 ~ 12.31의 경영성과	그다음 해 1.1 ~ 1.25

- 일반납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알린 예정통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예정통지세액은 다음에 신고 확정할 때 징수 가능 하나, 단 아래 경우에 예정신고 필요함

대상	납세기간	예정 납세신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자</li> <li>• 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li> <li>• 예정 통지한 사업자 중, 경영부실로 조기 폐업한 자</li> </ul>	제1기 예정신고 (1.1 ~ 3.31의 경영성과)	4.1 ~ 4.25
	제2기 예정신고 (7.1 ~ 9.30의 경영성과)	10.1 ~ 10.25

(\*) 법인사업자 예정 신고납부(4월 및 10월 신고확정/7월 그다음 해 1월 납부필요)

- 신고 안 할 경우의 불리한 점
  - 조사결과에 의해 해당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함.
  - 부당신고 불성실가산제(계산에서 나온 세액 X 20%)
  - 부당납부 불성실가산제(미납의 세액 X 0.03% X 경과일수)

## Q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단,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양도가 인정됩니다.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기본세율	간이과세자일 경우의 세율
당해주권 등의 양도 가액	5/1,000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5/1,000 합회중개시장(코스닥)에서 양도되는 주권: 3/1,000

##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서울시의 세입을 구성하는 “서울시세”와 25개 자치구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14개 세목, 자치구는 재산세를 비롯한 3개 세목이 있습니다.

## Q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따릅니다. 그러나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한 건축(신축 개축 제외) 개수하는 경우와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이 때문에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로 하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대상	종과세율	비고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일반세율(2%)의 5배 종과 (2%×5배=1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 지역 공업지역 제외) 내에서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2%)의 3배 종과 (2% × 3배=6%)	개인도 적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만큼은 종과 제외(2003. 12. 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 물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및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점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 토지포함)		본점 및 사업용 부동산은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며 복지후생시설 등은 제외

### Q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권리 등을 등기 등록할 당시의 가액이나 채권 금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등기등록 다시 가액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따릅니다. 다만 신고자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부 동 산 등 기	소유권	상속으로 인한 취득	0.8%(농지는 0.3%)	
		상속외의 무상취득	1.5%(비영리사업용은 0.8%)	
		유상취득	2%(농지는 1%)	
		소유권의 보존	0.8%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해 받은 부동산 가액	0.3%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	0.2%
		저당권	채권금액	
		지역권	요권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가등기	부동산가액			
위의 것 외의 등기		매건	3,000원	
법 인 등 기	법인의 설립과 합병	설립과 불입 자본출자의 증가	불입액 0.4% (비영리법인은 0.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단, 재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자본 전 입하는 경우는 제외)		증가금액 0.1%	
	본점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	75,000원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	23,000원	
위의 것 외의 등기			23,000원	
기 타 등 기	자동차 등록	비영업 승용차 영업용 신규등록이 아닌 변경등록 (※경차의 경우는 '비영업승용차'에 해당하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5% 2% 7,500원	
	선박 등기		0.2~1%	
	항공기 등록		0.01~0.02%	
	건설기계 등록	신규, 소유권 이전 저당권설정	1% 0.2%	
	신탁재산 등기		1%	



**Tip**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세 종과세율

적용대상	비고
대도시내 법인설립, 지정분사무소설치등기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등기 대도시내 법인설립,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등기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대도시내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일반세율(2%)의 3배 (2% x 3배=6%)

##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균등분은 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 정액 과세하는 주민세이며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준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은 과세 대상에 등재된 사업주(개인, 법인) 소유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 총면적 1 제곱 미터당 250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액

구분	과세대상	세액	비고
개인균등분	구내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내에서 조례로 결정	제한세율
	구내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표준세율
법인균등분	종업원 수 100인 초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00억 원 초과	500,000원	표준세율
	종업원 수 100인 초과,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	350,000원	
	종업원 수 100인 이하,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50억 원 초과 법인	200,000원	
	종업원 수 100인 초과,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		
	종업원 수 100인 이하,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	100,000원	
	종업원 수 100인 초과,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		
	기타법인	50,000원	
	재산분	사업소 총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주민세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병기고지)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내야 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와 2)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 표준세율의 5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종업원은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대상	세율	비고
소득분	소득세분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자	소득세액의 100%
	법인세분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자	법인세액의 100%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	표준세율

## 외국인 투자기업 과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구분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 종합과세 - 신고납부	- 분리과세 - 원납적 원천징수	20%(채권 14%)	
배당소득			20%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	
사용료 소득			20%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0%	
기타소득			20%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개인: 분류과세 - 법인: 종합과세	
근로소득(개인)	종합과세		거주자와 동일	
퇴직소득(개인)	종합과세			

 **Tips** 종합과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 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 「노무·고용」

### 노무란?

▶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국가권력으로 그 시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 고용법



#### 적용범위

구분	법	근로자수	비고
개별적 근로 관계법	근로기준법	전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일부조항만 적용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작성의무
	최저임금법	전사업장	- 시급 : 2015년 : 5,580원, 2016년 : 6,030원
	산업안전보건법	전사업장	- 일부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전사업장	- 일부업종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전사업장	- 일부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 적용제외
집단적 노사 관계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0인 이상	-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노동위원회법	전사업장	- 5인이상시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
고용 관련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E-7근로자의 경우 출입국의 허가  - E-9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Q 노동조건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안내

구분	기준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 합의 후 1주 12시간		본인동의(여성)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7시간	40시간	1일 1시간, 1주 6시간		본인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임신 근로자	8시간	40시간	불가		본인청구/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 합의 후 1일 2시간, 1주에 6시간, 1년 150시간		본인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Q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1주일에 1일, 1년에 15일 이상 휴일(휴가)을 주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 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보험



Q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일정 요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은 ①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질병과 부상에 관한, 건강보험 ③ 폐질·사망·노령에 관한, 국민연금 ④ 실업에 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업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Q 4대 보험(www.4insure.or.kr)

#### 4대 보험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 관할지사	건강보험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적용사업장	상시인 이상	상시인 이상	상시인 이상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적용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5세 미만	전 근로자
가입제외	1개월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사업주	
외국인	원칙적 가입대상 (국가별 상호주의)	가입대상	임의	가입대상
신고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신고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① 사업장해당 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① 사업장해당 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 자 격취득신고서	①보험가입신청서 ②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자격취득	입사일	입사일	입사일	-
자격상실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다음날	-
보장내용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양, 건강검진, 재활지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상세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위의 사항은 www.4insure.or.kr 에서 확인가능하며 가입도 가능합니다.

### Q 4대 보험 요율표

#### 4대 보험 요율표

종류	부담주체		
	보험료율(전체)	근로자	사용자(회사)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6.07%	3.035%	3.035%
	건강보험료의 6.07%	가입자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1.3%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규모별 차이	·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적용 전액 사업주부담		

※ 보험료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최신자료는 4insure.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 및 의장제도」

###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하며, 발명,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제도

Q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의장법(意匠法)·상표법·발명 보호법·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Q 특히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협정 등의 국제 협정을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내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종류

### 지식재산권의 종류

	분류	대상
산업 재산권	특허	원천, 핵심기술(대발견)
	실용신안	주변/ 개량기술(소발견)
	의장	물건의 디자인
	상표	식별력있는 기호/문자 도형
저작권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 권리
신지식 재산권	첨단저작권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기타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 색채상표/입체상표, 맛/소리/냄새상표 등

### 산업재산권 개요

구분	보호대상	관련법률	보호기간
특허권	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수단 등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특허법	출원일부 20년
실용신안권	고안 : 물건의 생산수단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실용신안법	출원일부 10년
의장권	의장 : 물건의 외적형상, 모양, 색채등 미적 창작	의장법	출원일부 15년
상표권	상표 : 상품의 식별표시로서의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표법	출원일부 10년

## 출원 및 등록절차



### I 특허/실용신안 I

#### Q 선행기술조사

- 특허출원을 하려는 분은 출원서류 작성에 앞서 동 발명과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출원의 사전등록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02-6915-6000

#### Q 사용자등록(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 특허청에 처음으로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 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출원인코드는 앞으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이용신고 후 특허청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명세서/서식 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도면(별지 제17호 서식 : 필요시 단, 실용신안은 필수) 순으로 작성하고, (요약서, 명세서, 제도면서식은 특허출원서식 다운 시 같이 포함) 출원서류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어야 합니다.)
-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 서식), 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요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도면(별지 제17호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제출서류준비

- 출원서(명세서, 요약서, 도면 포함)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 "특허로(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서류별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Q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되며, "특허로(www.patent.go.kr)→특허관리→특허보관함"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특허로(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서류별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Q 수수료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내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Q 출원공개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출원공개를 신청(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5호 서식 : 조기공개신청서)할 수 있으며 신청 3~4주 후 공개되지만 이 때문에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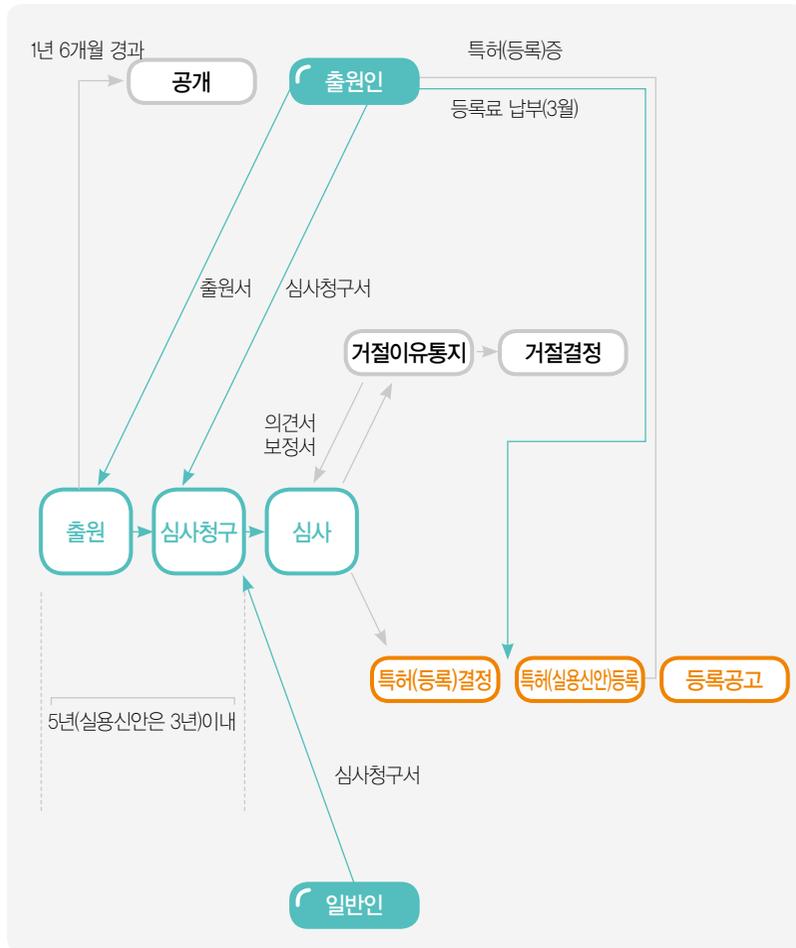
#### Q 심사청구 및 심사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은 3년)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출원 후에 신청시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의 세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출원인의 특허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등록료 납부

-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내리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시고, 온라인으로 내리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낼 수 있습니다.

## Q 특허(실용신안)출원 및 심사절차도



## I 디자인 I

### Q 선행디자인심사 / 자료조사

-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원서 작성에 앞서, 동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 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 출원의 사전등록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 검색 문의 : 특허청 1544-8080,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02-6915-6000

### Q 사용자등록(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 특허청에 처음으로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 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출원인코드는 앞으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이용신고 후 특허청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명세서/서식 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경우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물품이 입체디자인인 경우는 입체디자인도면(별지 제4호 서식)을, 평면디자인인 경우는 평면디자인도면(별지 제5호 서식)을, 글자체디자인인 경우는 글자체디자인도면(별지 제6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을 별표1, 2의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무심사대상물품 : 제조식품 및 기호품, 직물지, 의복류, 침구, 마루갈래, 커튼, 사무용지, 인쇄물, 포장지, 포장용 용기, 편물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도형 등이 표시되어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등
- \* 참고사항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신규하고, 창작적이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로(www.patent.go.kr) → 민원서식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코자 하시면 이미 등록된 등록디자인공보를 견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Q 제출서류준비

- 출원서(도면 포함) 1통,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 Q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되며, "특허로(www.patent.go.kr)→특허관리→특허보관함"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창(우. 302-701)]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내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Q 디자인 심사 및 무심사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심사관이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 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심사착수시기 <가변적임> : 출원일로부터 약 12개월 전후)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형식적 요건과 일부 실체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등록시키는 제도로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Q 등록료 납부

-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료 면제 및 감면대상 등으로 인하여 등록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내리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설정 특허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시고, 온라인으로 내리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낼 수 있습니다.

## Q 디자인 등록출원 및 심사 절차도



## I 상표-서비스표 I

### Q 견본준비

- 견본(가로, 세로 각각 8cm×8cm 이내 크기) 1통 준비

### Q 선출원 · 등록상표 조사

-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출원서 작성에 앞서, 자신이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선출원 · 선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검색창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을 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의 검색창을 통해 해당 출원의 사전등록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Q 사용자등록(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 특허청에 처음으로 상표등록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인장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출원인 코드는 앞으로 상표 등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이용신고 후 특허청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서식안내: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민원서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출원서작성

- 출원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원구분】란의 상표등록출원을 선택하고 【권리구분】란 에서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중 출원하고자 하는 권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은 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류와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서식안내 : 위 서식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허로(www.patent.go.kr)→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 「상표출원서(제2호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NICE 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코드/분류조회 →상품/서비스업분류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Q 제출서류준비

- 출원서(상표견본 포함) 1통, 기타 서류별 해당 증명서류(정관, 정관요약서, 경영사실 입증서류 등)1통.

### Q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방문하여 접수하려는 분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접수 즉시 현장에서 출원번호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려는 분은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도움이 되며, "특허로(www.patent.go.kr)→특허관리→특허보관함"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우. 302-701)]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수수료 납부

-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내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Q 심사 및 이의신청

- 상표 · 서비스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 · 서비스표 심사관은 출원 순서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 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심사착수 시기는 가변적이며 출원일로부터 상표는 약 11개월 전후입니다.)

- 심사관은 심사 후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며,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 등록료 납부

- 특허청에서는 등록결정서와 함께 납부자번호 · 출원번호 · 등록료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총금액 · 정상납부기일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보내므로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내야 합니다.

- 등록료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분할하여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설정등록료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와 「등록세납부서」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방문 수령 후, 먼저 등록세납부서의 납부자번호란에 출원번호를 기재하고 등록세·지방교육세·합계액을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낸 후 상표권설정등록료납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등록세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접수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권설정등록료납부서 접수 즉시 납부자 번호 및 등록료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접수한 다음 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내면 됩니다. (\* 「등록세납부서」용지는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와 서울사무소에 비치)
- 단, 우편 납부 시에는 등록료 등의 금액을 통상환으로 바꾸어 설정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시고, 온라인 납부 시는 특허청의 특허로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Q 상표-서비스표 출원 및 심사절차도



## 부동산

### 부동산이란?

▶ 토지용도 및 면적의 제한 없이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개인 및 법인)은 토지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의거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보존지역, 섬지역, 전통건조물보존구역 등은 예외적으로 사전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 부동산 임대

### 임대차종류

유형	설명	장/단점	부연
<b>보증금 + 월세</b> 예) 2천4백만 원 보증금 + 2백만 월세지급	보증금 (만기 시 환불 가능) + 월세 개념	-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상가(업무용) 계약에 주로 쓰임 - 권리분석 중요 - 부동산은 계약에만 관여함	- 업무용, 주거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계약 형태 - 사무실 - 식당 - 주택
<b>전세</b> 예)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임대인에게 예치	통상 주택가치의 절반 정도의 전세금(환불가능)을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예치시킴	- 임대료 없음, 계약종료 시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음 - 권리분석 매우 중요→용자, 소유권 등 - 세입자(외국인)가 직접 주택관리 - 원상복구문제 발생 가능(전세금 환불 문제)	- 한국인 혹은 교포가 주로 계약하는 형태 - 회사 및 단체가 계약 주체일 때 전세권 설정 필수 - 전세금 반환분쟁 가능성이 있어 자국으로의 귀국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외국인은 다소 어려움

## 임대관련 유의사항

업무용(사무실, 식당, 상가 등) 부동산 임대 시에는 다음을 주의 해야 합니다.

### 임대 전

- Q - 무료주차대수, 유료주차대수, 방문객주차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앙 또는 개별 냉·난방시스템 여부 및 관리비에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호간판 지정 여부 및 합법성을 확인합니다.
- 권리금\*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주의합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속적인 인상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자를 선정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서울시 선정 글로벌 공인중개사인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부동산인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언어장벽 등으로 거주기간 동안 소소하게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중개업소에서 거주기간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금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과 월임차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 임대차 계약

- Q - 구비서류
  - 임차인 : 외국인등록증(개인별 거래 시)
  - 임대인 :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
  -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원본(대지/주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대차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 유의사항
  - 임대인 또는 전대인과의 직접계약은 특히 주의합니다.
  - 정착 도우미(Relocation)회사는 한국에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닐뿐더러 분생 시 부동산 업무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록된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계약 시에는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연장계약내용을 필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지합니다.
  -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서울글로벌센터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필히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정보
  - 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 자치구 홈페이지 및 KOTR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주민(법인)등록번호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민(법인)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과도한 대출이 있는지 권리분석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 잔금 납부시 :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월 공동관리비 및 방범유지비(캡스/에스원 또는 사설경비 등) 비용을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면 특약에 기재 확인합니다.

## Q 입주(이사)

- 주택의 시설물들을 점검합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시설물, 바닥재, 벽지, 정원 및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과금(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등) 정산서와 열쇠 인수증을 보관합니다.
- 전화, 인터넷, TV, 수도를 신청합니다.
- 해당 구청/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습니다.
- 개인별 계약 시(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없음)
-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인에 대한 권리 분쟁에 관해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총임대료 선불금이 채권최고액) 또는 전세권(총 보증금액)을 해당 등기소에 설정합니다. (법인 및 단체 필수사항) 이에 임차인은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 VII.

서울시  
외국인 창업  
가이드



# 「업종별 창업가이드」

## 전자상거래업



### Q 창업절차

- 1 아이템 선정
- 2 도매처 확보
- 3 도매인 등록
- 4 사이트 구축
- 5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시작한 즉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구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신고처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외국인직접투자신고서 사본 1부
-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및 출자자명세서

## 6 통신 판매업 신고

### 구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신고처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12.8.18부터 의무화)

개별쇼핑몰	오픈마켓
은행 에스크로이체 신청 취급은행: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자동가입 오픈마켓에 문의

- 신분증
- 면허세 45,000원(일반과세자일 경우, 간이과세자일 경우 면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사업자)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신고처

- 접수 : 쇼핑몰 사업지 소재 관할 구청 접수처
- 담당 : 쇼핑몰 사업지 소재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교육비 26,000원,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영업장 주소

\*영업신고자 본인이 해야 함

### 교육장 주소

-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교육장 3층), (사무실 4층 402호)
- ▶ 교육상담 : 3672-3231~3
- ▶ 교육안내 : 3672-3234~6

지하철 : 1호선 ▶ 종로5가역 하차 2번 출구에서 직진 200m 정도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3층  
버 스 : 종로5가역, 종로 6가 하차, 중부교육청 하차

### c. 보건증

- 발급수수료 1,500원(7일 소요)
- 관할 보건소

### d. LPG 사용 시 -도시가스공사에서 검사증명

e. 식당이 지하에 위치 또는 100㎡ 넘으면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서 소방검사  
인수의 경우는 신규 주인이 함께 소방서 방문,  
신규의 경우는 검사 신청해서 검사받아야 함

### f. 신고서 - 구청 위생과에서 작성

g. 건축물 대장(구청에서 확인)-용도 식당이 안될 경우 건축과에서 용도 변경(건물주)

###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기준 : 문광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 사증신청

신규 : 문광부 관광편의시설업 폐지  
출입국에 직접 업체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요건 : 1. 면적 60㎡이상  
2. 연간 매출 6000만 원 이상  
3. 내국인 2인 이상 고용 해야 함

이후 요리사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공증 및 영사 확인 필요  
출입국 본관 3층 사증과 상담이 필요함

- 해당 국가 자격증 및 경력 5년 이상
- 경력 10년 이상

## 음식점(레스토랑)



### Q 창업절차

#### 1 임대계약서 작성

계약을 맺기전 해당 주소를 가지고 구청에 식당이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 2 영업신고증 발급

a. 임대차 계약서

b. 위생교육 수수료증

- 한국외식업 중앙회 <http://edchoongang.foodservice.or.kr>

매주 3회 월, 수, 금 / 09:00~16:00(6시간)

### 3 사업자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신고처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영업신고필증
- 외국인직접투자신고서 사본 1부
-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및 출자자명세서

## 인터넷 무역업



66

### Q 인터넷 무역 수입절차

#### 1 인터넷 해외공급원 조사 및 발굴

#### 2 인터넷 무역 조회주문

#### 3 수입계약 체결

#### 4 수입승인(필요시)

#### 구비서류

- 수입승인 신청서  
일반재 (내수용)로 수입 시에는 "수입승인 신청서",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 시에는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승인 신청서" 작성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대행사)
- 기타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유효기간

-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1년임.

신고처

- 수입승인가관은 상품분류(HS CODE NO)에 따라 전부 다름.

### 5 신용장 개설

#### 신용장 개설방법

-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 신용장 개설절차

- 신용장 개설은행과 외국인 거래약정 체결 및 구비서류 거래은행에 제출
- 여신거래 한도책정 및 신용장 개설
-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에 따른 신용장발행 수수료(Opening Charge), 전신료(Cable Charge), 코레스비용(Corres Charge)등 부담

#### 구비서류

-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서(은행양식)
- 수입승인서(필요 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또는 매매계약서
-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증서, 상업신용장 약정서(은행양식) 등
- 기타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6 선적서류내도 및 대금결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영어학원



67

학원은 관할교육청에 가서 학원설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한 후에 관할구청에 면허세를 내고 소정의 연수를 받은 후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은 교육 관련 사업이므로 많은 절차와 규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창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관할 교육청의 상담이 필요함)

### Q 설립절차

#### 1 부동산 계약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소를 가지고 관할 교육청 사무소에서 학원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강의실 크기(강의실 외의 공간은 강의실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강의실 위치(지하실)
- 주변 상가와의 거리(어린이 학원의 경우)

## 2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8일
- 교육청 신청 전에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총수용도를 확인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라고 되어있지 않을 경우 용도변경 후 교육청에 신청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 법인사업자일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모두의 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동의 필요

## 3 서류검토(교육청)

- 미비점 보완

## 4 시설·설비 완성

- 담당자의 현장 조사 확인

## 5 학원설립·운영 등록 결재

- 면허세 납부(관할구청)
- 학원연합회 연수를 받은 후 본인이 등록증 수령
  - 인감도장, 면허세납부 영수증, 연수교육필증 지참

## 6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 Q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필요시설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교육청 비치)
- 원칙(교육청 비치)
- 학원카드(교육청 비치)
- 학원의 위치도(약도)
-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학원의 시설 평면도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증 제시), 인감증명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계약시 인감도장 사용)

## Q 학원설립·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학원위치도'에는 방향 및 주변 주요건물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 '시설평면도'는 칸막이 시설 등을 확인 후에 내부시설 구조를 그려서 제출합니다. 또한 실측거리도 명시합니다.
- 신청서 내용 중, 강사명단과 개강 년, 월, 일은 필히 기재합니다. (강사명단은 등록증 교부 후 강사를 채용합니다: 통보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개강 년, 월, 일>은 등록신청 후 10일 이후가 타당합니다.)
- 시설기준면적

계열	고급과정	강의실	비고
외국어	어학	150㎡	
	통역, 번역	70㎡	
보통교과	보습	70㎡	



## 「부록」

### 서울의 소상공인지원 서비스



#### Q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 서울글로벌센터

창업과 경영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11 상담서비스와 더불어 심도 있는 분야별 전문가와의 상담서비스 또한 마련되어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는 전문화 된 상담서비스로 한발 더 꿈에 다가서십시오.

<http://global.seoul.go.kr>

[hotline@seoul.go.kr](mailto:hotline@seoul.go.kr)

Tel : 82-2-2075-4180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서울시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외국기업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강남과 여의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 기타 심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 남 : <http://global.seoul.go.kr/bizsupport/biz.do>

Tel : 82-2-6001-7240~2

여의도 : <http://global.seoul.go.kr/yeouido/biz.do>

Tel : 82-2-6137-9830

##### KOTRA-ICC(Investment Consulting Center)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단계별 행정업무처리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기관입니다. 민간전문가와 정부 주요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이 단계별 체계적 상담을 해 드립니다.

<http://www.investkorea.org>

Tel : 1600-7119

#### Q 인큐베이션 서비스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신뢰할만한 외국 기업인과 투자자들에게 센터 내 인큐베이션 오피스를 무상으로 임대 합니다.

강 남 : <http://global.seoul.go.kr/bizsupport/biz.do>

Tel : 82-2-6001-7240~2

여의도 : <http://global.seoul.go.kr/yeouido/biz.do>

Tel : 82-2-6137-9830

##### Invest Korea Plaza

KOTRA에서 마련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인큐베이션 전문 시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무실 공간과 회의실 등,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http://www.investkorea.org>

Tel : 1600-7119

#### Q 소상공인 자금·교육·경영지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서울시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금지원과 분야별 다양한 창업교육과정, 그리고 창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며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eoulsbdc.or.kr>

Tel : 1588-5302

#### Q 창업교육 및 세미나

##### 서울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상담 팀에서는 매 분기별 '외국인창업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꿈꾸시는 외국인 투자자분들께 기초부터 분야별 심화정보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global.seoul.go.kr>

[hotline@sba.seoul.kr](mailto:hotline@sba.seoul.kr)

Tel : 82-2-2075-4180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매월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네트워킹 구축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강 남 : <http://global.seoul.go.kr/bizsupport/biz.do>  
Tel : 82-2-6001-7240~2

여의도 : <http://global.seoul.go.kr/yeouido/biz.do>  
Tel : 82-2-6137-9830



## 기관목록



### Q 주요 정부기관

기관	전화번호	웹사이트
기획재정부	02-2150-2114	<a href="http://www.mosf.go.kr">http://www.mosf.go.kr</a>
교육부	02-6222-6060	<a href="http://www.moe.go.kr">http://www.moe.go.kr</a>
외교부	02-2100-2114	<a href="http://www.mofa.go.kr">http://www.mofa.go.kr</a>
통일부	1577-1365	<a href="http://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a>
법무부	02-503-7023	<a href="http://www.moj.go.kr">http://www.moj.go.kr</a>
국방부	02-748-1111	<a href="http://www.mnd.go.kr">http://www.mnd.go.kr</a>
법제처	02-2100-2520	<a href="http://www.moleg.go.kr">http://www.moleg.go.kr</a>
문화체육관광부	02-3704-9114	<a href="http://www.mcst.go.kr">http://www.mcst.go.kr</a>
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a href="http://www.maf.go.kr">http://www.maf.go.kr</a>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a href="http://www.motie.go.kr">http://www.motie.go.kr</a>
보건복지부	129	<a href="http://www.mw.go.kr">http://www.mw.go.kr</a>
환경부	1577-8866	<a href="http://www.me.go.kr">http://www.me.go.kr</a>
고용노동부	1350	<a href="http://www.moel.go.kr">http://www.moel.go.kr</a>
여성가족부	02-2075-4500	<a href="http://www.mogef.go.kr">http://www.mogef.go.kr</a>
국토교통부	1599-0001	<a href="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a>
방송통신위원회	1335	<a href="http://www.kcc.go.kr">http://www.kcc.go.kr</a>

## Q 구청

기관	전화번호	위치
종로구청	2148-1114	5호선 광화문역 하차,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a href="http://www.jongno.go.kr">http://www.jongno.go.kr</a>	
중구청	02-3396-4114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하차, 6번 출구에서 도보 6분
	<a href="http://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a>	
용산구청	02-2199-6114	6호선 녹사평역 하차, 3번 출구에서구에서 도보 6분
	<a href="http://www.yongsan.go.kr">http://www.yongsan.go.kr</a>	
성동구청	02-2286-5114	2호선, 6호선, 중앙선 왕십리역 하차, 4번 출구 도보 5분
	<a href="http://www.seongdong.seoul.kr">http://www.seongdong.seoul.kr</a>	
광진구청	02-450-1114	2호선 구의역 하차, 1번 출구 도보 5분
	<a href="http://www.gwangjin.go.kr">http://www.gwangjin.go.kr</a>	
동대문구청	02-2127-5000	2호선 용두역 하차, 3번 출구 홈플러스 뒤
	<a href="http://www.ddm.go.kr">http://www.ddm.go.kr</a>	
중랑구청	02-2094-0114	7호선 중화역 하차, 2·3번 출구에서 273 · 1223 · 2012A · 2216번 탑승, 중랑구청 하차
	<a href="http://www.jungnang.seoul.kr">http://www.jungnang.seoul.kr</a>	
성북구청	02-920-3114	6호선 보문역 하차, 3번 출구에서 142 · 273 · 1014번 탑승 후 성북구청 정류장 하차
	<a href="http://www.seongbuk.go.kr">http://www.seongbuk.go.kr</a>	
강북구청	02-901-6114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 출구 도보 5분
	<a href="http://www.gangbuk.go.kr">http://www.gangbuk.go.kr</a>	
도봉구청	02-2091-2120	1호선 방학역 하차, 2번 출구 도보 5분
	<a href="http://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a>	
노원구청	02-2116-3114	4·7호선 노원역 하차, 8번 출구에서 350m
	<a href="http://www.nowon.kr">http://www.nowon.kr</a>	
은평구청	02-351-6114	3호선 북번역 하차,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a href="http://www.ep.go.kr">http://www.ep.go.kr</a>	
서대문구청	02-330-1114	2호선 신촌역 하차, 1번 출구에서 713 · 7720번 탑승 후 서대문구청 정류장 하차
	<a href="http://www.sdm.go.kr">http://www.sdm.go.kr</a>	
마포구청	02-3153-8114	6호선 마포구청역 하차, 3번 출구에서 200m
	<a href="http://www.mapo.go.kr">http://www.mapo.go.kr</a>	
양천구청	02-2620-3114	2호선 양천구청역 하차, 2번 출구에서 6624번 탑승 후 양천구청 정류장 하차
	<a href="http://www.yangcheon.go.kr">http://www.yangcheon.go.kr</a>	
강서구청	02-2600-6114	5호선 화곡역 하차, 4번 출구에서 604 · 5712 · 6514번 버스 탑승, 강서구청 정류장 하차
	<a href="http://www.gangseo.seoul.kr">http://www.gangseo.seoul.kr</a>	
구로구청	02-860-2114	2·7호선 대림역 하차, 4번 출구에서 구로 10번 버스 탑승 후 구로구청 정류장 하차
	<a href="http://www.guro.go.kr">http://www.guro.go.kr</a>	

기관	전화번호	위치
금천구청	02-2627-2114	1호선 금천구청역 하차, 1번 출구에서 금천04번 탑승 후 금천구청 정류장 하차
	<a href="http://www.geumcheon.go.kr">http://www.geumcheon.go.kr</a>	
영등포구청	02-2670-3114	2·5호선 영등포구청역 하차, 2번 출구 바로 앞
	<a href="http://www.ydp.go.kr">http://www.ydp.go.kr</a>	
동작구청	02-820-1114	1호선 노랑진역 1번 출구, 9호선 노랑진역 5번 출구
	<a href="http://www.dongjak.go.kr">http://www.dongjak.go.kr</a>	
관악구청	02-879-5000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a href="http://www.gwanak.go.kr">http://www.gwanak.go.kr</a>	
서초구청	02-2155-6114	3호선 양재역 하차, 8번 출구에서 100m 이내
	<a href="http://www.seocho.go.kr">http://www.seocho.go.kr</a>	
강남구청	02-2104-1114	7호선 강남구청역 하차, 1번 출구 도보 5분
	<a href="http://www.gangnam.go.kr">http://www.gangnam.go.kr</a>	
송파구청	02-2147-2000	2·8호선 잠실역 하차, 10번 출구에서 100m
	<a href="http://www.songpa.go.kr">http://www.songpa.go.kr</a>	
강동구청	02-1577-1188	8호선 강동구청역 하차, 2번 출구에서 150m
	<a href="http://www.gangdong.go.kr">http://www.gangdong.go.kr</a>	

## Q 세무서

기관	전화번호/웹사이트	위치
서울지방국세청	02-397-2200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서울시내 전역 관할
	<a href="http://s.nts.go.kr">http://s.nts.go.kr</a>	
동대문세무서	02-958-0200	1호선 청량리역 하차,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동대문구, 중랑구 관할
	<a href="http://s.nts.go.kr/ddm">http://s.nts.go.kr/ddm</a>	
동작세무서	02-840-9200	1호선 노랑진역 1번 출구, 9호선 노랑진역 3번 출구에서 250m/ 영등포구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및 동작구 관할
	<a href="http://s.nts.go.kr/dj">http://s.nts.go.kr/dj</a>	
강동세무서	02-2224-0200	2호선 잠실나루역 1번 출구, 8호선 강동구청역 4번 출구/ 강동구 관할
	<a href="http://s.nts.go.kr/gd">http://s.nts.go.kr/gd</a>	
강남세무서	02-519-4200	7호선 청담역 8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관할
	<a href="http://s.nts.go.kr/gn">http://s.nts.go.kr/gn</a>	
강서세무서	02-2630-4200	2,9호선 당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15분/ 강서구 관할
	<a href="http://s.nts.go.kr/gs">http://s.nts.go.kr/gs</a>	
금천세무서	02-850-4200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2번 출구 하차, 구로06번/ 금천구, 관악구 관할
	<a href="http://s.nts.go.kr/gc">http://s.nts.go.kr/gc</a>	
구로세무서	02-2630-7200	1호선 영등포역 하차, 5번 출구 중앙정류장에서 아무 노선이나 탑승 후 1정거장 이동/ 구로구 관할
	<a href="http://s.nts.go.kr/gr">http://s.nts.go.kr/gr</a>	

기관	전화번호/웹사이트	위치
종로세무서	02-760-9200	1,3,5호선 종로 3가역 하차, 6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종로구 관할
	<a href="http://s.nts.go.kr/jn">http://s.nts.go.kr/jn</a>	
중부세무서	02-2260-9200	3,4호선 충무로역 하차, 4번 출구 도보 3분/ 6호선 대흥역 하차, 4번 출구 도보 3분/ 마포구 관할
	<a href="http://s.nts.go.kr/jb">http://s.nts.go.kr/jb</a>	
마포세무서	02-705-7200	6호선 대흥역 하차, 4번 출구 도보 3분/ 마포구 관할
	<a href="http://s.nts.go.kr/mp">http://s.nts.go.kr/mp</a>	
남대문세무서	02-2260-0200	2,3호선 을지로3가역 하차, 12번 출구 도보 3분/ 소공동, 남창동, 회현동 등 남대문 일대 관할
	<a href="http://s.nts.go.kr/ndm">http://s.nts.go.kr/ndm</a>	
노원세무서	02-3499-0200	1,4호선 창동역 하차, 1번 출구 도보 3분/ 노원구 및 도봉구 창동 관할
	<a href="http://s.nts.go.kr/nw">http://s.nts.go.kr/nw</a>	
삼성세무서	02-3011-7200	2호선 강남역 하차, 1번 출구에서 3번째 건물/ 강남구 관할
	<a href="http://s.nts.go.kr/ss">http://s.nts.go.kr/ss</a>	
서초세무서	02-3011-6200	2호선 강남역 하차, 1번 출구에서 3번째 건물/ 서초구 관할(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제외)
	<a href="http://s.nts.go.kr/sc">http://s.nts.go.kr/sc</a>	
서대문세무서	02-2287-4200	3호선 홍제역 하차, 2번 출구에서 좌측 2번째 건물/ 은평구, 서대문구 관할
	<a href="http://s.nts.go.kr/sdm">http://s.nts.go.kr/sdm</a>	
성북세무서	02-760-8200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3번 출구에서 도보 5~7분/ 성북구 관할
	<a href="http://s.nts.go.kr/sb">http://s.nts.go.kr/sb</a>	
성동세무서	02-460-4200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하차, 5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성동구, 광진구 관할
	<a href="http://s.nts.go.kr/sd">http://s.nts.go.kr/sd</a>	
송파세무서	02-2224-9200	2호선 잠실나루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20분 또는 택시 탑승/ 송파구 관할
	<a href="http://s.nts.go.kr/sp">http://s.nts.go.kr/sp</a>	
양천세무서	02-2650-9200	5호선 오목교역 하차, 8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양천구 관할
	<a href="http://s.nts.go.kr/yc">http://s.nts.go.kr/yc</a>	
역삼세무서	02-3011-8200	2호선 강남역 하차, 1번 출구에서 3번째 건물/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포이동 관할
	<a href="http://s.nts.go.kr/ys">http://s.nts.go.kr/ys</a>	
영등포세무서	02-2630-9200	2,5호선 영등포구청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영등포구 관할(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제외)
	<a href="http://s.nts.go.kr/ydp">http://s.nts.go.kr/ydp</a>	
용산세무서	02-748-8200	4호선, 중앙선 이촌역 5번 출구에서 500m/ 용산구 관할
	<a href="http://s.nts.go.kr/ys">http://s.nts.go.kr/ys</a>	
도봉세무서	02-944-0200	4호선 미아 삼거리역 하차,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관할
	<a href="http://s.nts.go.kr/db">http://s.nts.go.kr/db</a>	

## Q 법인등기소([www.iros.go.kr/1544-0773](http://www.iros.go.kr/1544-0773))

등기소	관할구역·주소
강서등기소	강서구
	[157-73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도 54길 14(화곡동 980-26)
	5호선 화곡역 하차, 강서구청 방면 버스 이용
구로등기소	구로구, 금천구
	[152-84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1 (구로동 107-3)
	1,2 호선 신도림역 하차, 2번 출구에서 5619, 6411, 6511, 6653 버스 이용
서울남부 지방법원 등기과	양천구
	[158-73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 (신정동 313-1)
	5호선 목동역 하차, 7번 출구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400m
영등포등기소	영등포구
	[150-9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문래동 1가 34-4)
	1,2호선 신도림역(1번출구) 또는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버스 이용
강동등기소	강동구
	[138-8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 (잠실동 313-1)
	2호선 종합운동장역 하차, 4번출구에서 3314,3417번 버스이용/8호선 석촌역하차, 7번출구에서 340,353번 버스이용
서울동부 지방법원등기과	광진구, 성동구
	[143-70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4 (지양동 680-22)
	2호선 구의역 하차, 3번출구에서 도보 2분
송파등기소	송파구
	[138-86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 (잠실동 313-1)
	2호선 종합운동장역 하차, 4번출구에서 3314, 3417번 버스이용/8호선 석촌역하차, 7번출구에서 340, 363번 버스이용
도봉등기소	강북구, 도봉구
	[132-045]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25 (창동 337)
	1,4호선 창동역 하차, 2번 출구 북부교육청 방향 200m
동대문등기소	동대문구
	[130-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6 (신설동 92-3)
	1,2호선 신설동역 하차, 4번 출구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40mm
서울북부 지방법원등기과	노원구, 중랑구
	[131-83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42 (면목동 378-12)
	7호선 용마산역 하차, 1번출구에서 중랑구민회관 방향 200m
서울서부 지방법원등기과	마포구
	[121-7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105-1)
	5,6호선 공덕역 하차 4번출구에서 600m

등기소	관할구역 · 주소
서대문등기소	서대문구
	[120-8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3 (홍은동 273-6)
	3호선 홍제역 하차, 3번 출구에서 7713,7738번 이용 동산병원 하차
용산등기소	용산구
	[140-1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32 (문배동 24-5)
	삼각지역(4,6호선)하차, 8번출구에서 용산구청 방향
은평등기소	은평구
	[122-90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78 (응암동 95-1)
	3호선 녹번역 하차, 4번출구에서 은평구청 방향 700m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의 부동산등기 및 민법상 법인등기
	[137-884]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 1707-4)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서울중앙지방 법원 중부등기소	종로구, 중구
	[100-8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소문동 37-8)
	1·2호선 시청역 11번 출구로 나와 서울시립미술관 쪽으로 150m

## Q 고용센터

기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고용센터	02-2004-7301	www.work.go.kr/seoul
	서울시 중구 장교동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4층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관할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94	www.work.go.kr/seoulgangnam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7~10 층 강남구, 서초구 관할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24	www.work.go.kr/seouldongbu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송파 IT벤처타워 동관 3-5층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관할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00	www.work.go.kr/seoulseobu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4.5 층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관할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00	www.work.go.kr/seoulnambu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할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00	www.work.go.kr/seoulbukbu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성북구, 종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관할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00	www.work.go.kr/seoulgwanak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3층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관할	

## Q 상공회의소

기관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02-564-2040	www.amchamkorea.org
주한호주상공회의소	02-2010-8831	www.austchamkorea.org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010-2782-5494	http://kiwichamber.com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02-554-0245	www.canchamkorea.org
네덜란드 비즈니스 클럽 코리아	-	www.dbckorea.com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02-6261-2700	www.ecck.eu
한불상공회의소	02-2268-9505	www.fkcci.com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02-402-4379	www.itcck.org
영국상공회의소	02-2076-8407	www.back.or.kr
아일랜드 상공회의소	-	www.aicck.org
한독상공회의소	02-3780-4600	korea.ahk.de
스웨덴 상공회의소	02-3406-0691	www.scckkorea.org
서울재팬클럽	02-739-6962	www.sjchp.co.kr
한·스위스 비즈니스 위원회	-	www.skbcckorea.org

## Q 경제단체 및 기관

기관	전화번호	웹사이트
전국경제인연합회	02-3771-0110	www.fki.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4	www.kbiz.or.kr
한국개발연구원	02-958-4114	www.kdi.re.kr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00	www.kefplaza.com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114	www.kotra.or.kr
인베스트코리아	1600-7119	www.investkorea.org
한국수입업협회	02-792-1581	www.import.or.kr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02-2222-3800	www.setec.or.kr

## Q 은행

기관	전화번호	웹사이트
네덜란드 ING 은행	02-317-1800	www.ing.com
네덜란드 ABN암로은행	02-399-6600	www.abnamro.com
독일 도이체방크	02-724-4500	www.db.com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02-6730-0100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02-3706-4500	www.statestreet.com
미국 JP모건체이스은행	02-758-5114	www.jpmorgan.com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	02-2022-4500	www.bankofamerica.com
웰스파고	02-3706-3114	www.wellsfargo.com
스위스 크레디스위스은행	02-3707-3803	www.credit-suisse.com
스위스 UBS AG	02-3702-8888	www.ubs.com
싱가포르 DBS은행	02-399-2661	www.dbs.com
싱가포르 화교은행	02-754-2341	www.ocbc.com
아일랜드 메릴린치	02-3706-9600	www.ml.com
영국 HSBC	02-2004-0000	www.hsbc.co.kr
영국 모건스탠리은행	02-3275-4500	www.morganstanley.com
영국 골드만삭스은행	02-3702-7770	www.goldman-sachs.co.kr
이란 멜랏은행	02-2007-6700	
인도 인도해외은행	02-753-0741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	02-399-6400	www.bk.mufg.jp
일본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02-3782-8610	www.mizuhocbk.co.jp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02-732-1801	www.sumitomotrust.co.jp
중국 중국은행	02-399-6288	www.bank-of-china.com
중국 중국공상은행	02-755-5688	www.icbckr.co.kr
중국 중국건설은행	02-6730-1718	www.ccbseoul.com
중국 중국교통은행	02-2022-6888	www.bankcomm.com
캐나다 노바스코샤은행	02-2020-2340	www.scotiabank.com
파키스탄 국립은행	02-732-0277	-
프랑스 칼리옹은행	02-3700-9500	-
프랑스 BNP 파리바	02-317-1700	www.bnpparibas.com
프랑스 유바프은행	02-3455-5300	-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02-2195-7777	www.socgen.com
필리핀 메트로은행	02-779-2751	cafe.naver.com/mbseoul
호주 ANZ은행	02-730-3151	www.anz.com

Q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대표번호 : 1345)

기관	전화번호 · 주소 · 관할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032-740-7015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02-2650-6212
	서울특별시(세종로출장소 관할제외) · 광명시 · 성남시 · 안양시 · 하남시 · 과천시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세종로출장소	02-731-1799
	종로구 · 중구 · 은평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도봉구 · 성북구 · 강북구 · 노원구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032-890-6300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제외), 경기도 안산시 · 부천시 · 시흥시 ·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도로 393



Q **항공사**

항공사	전화번호	웹사이트
Incheon Airport Office	02-1577-2600	www.airport.kr/eng/
Lufthansa Airline	70-8686-2560	www.lufthansa.com/kr/en/Homepage
Malaysia Airlines	02-775-0952	www.malaysiaairlines.com.my
Mongolia Airline	02-275-9698	www.miat.com/index.php?mlang=eng
Vietnam Airline	02-757-8920	vietnam-airline.org/
Singapore Airline	02-757-8920	www.singaporeair.com
Asiana Airline	032-744-2139	www.flyasiana.com/english/
Aeroflot Airline Russia Airline	02-569-3271	www.aeroflot.ru/cms/en
United Arab Emirates Airline	02-2022-8400	www.emirates.com/kr/english
Air India Airline	02-752-5439	www.airindia.in
Air Canada Airline	02-3788-0100	www.aircanada.com/
Air France Airline	02-3483-1033	www.airfrance.co.kr
Air Hongkong Airline	02-311-2800	www.airhongkong.com.hk
Korean Air Line	1588-2001	www.koreanair.com/
Japan Airline	02-3788-5710	www.kr.jal.com/kr/en/
ANA Airline	02-752-5500	www.ana.co.jp/eng/fare/main/kt/
China Airline	02-774-6886	www.airchina.kr/en/index.html
China Southern Airlines	02-755-9070	www.flychinasouthern.com/
China Eastern Airline	02-518-0330	www.flychinaeastern.com/
Cathay Pacific Airline	02-311-2800	www.cathaypacific.com
Thai Airline	02-3707-0011	www.thaiair.co.kr

